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3선거구
김호평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
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제정·시행된 「청년기본법」의 규정
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
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,

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
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범위, 청년기업의 정의,
청년교육·청년기업에 대한 지원, 청년지원기관의 기능 규정
등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
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